

서울特別市永登浦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查報告書

시민보사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년 8월 28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1992년 9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1992년 9월 22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市民局長 李彰熙)

가.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분장규칙의 개정에 따른 직제개편 (가스계 신설)에 의거 일부조항 개정

나. 주요골자

○ 기금관리공무원중 기금출납공무원의 변경 (안 제5조)

(현 행) 기금출납공무원 : 연료계장

(개 정 안) 기금출납공무원 : 가스계장

○ 조문변경

제9조 제1항중 “제5조”를 “제6조”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金熙中)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영등포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5조 제2항 규정을 보면 기금출납공무원이 연료계장으로 되어 있으나 1992.

6. 30 영등포구 사무분장규칙 개정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산업과에 가스계가 신설됨에 따라 기금출납공무원을 가스계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타당하며

둘째, 조례 제9조 (용자신청절차등) 제1항중 조문체계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제5조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를 제6조(용자대상자)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심 사 결 과 원 안 가 결

서울特別市永登浦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의안 번호	99
----------	----

제출년월일 : 1992. 8. 28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분장규칙의 개정에 따른, 직제개편(가스계 신설)에 의거 일부조항 개정

2. 주요골자

- 기금 관리 공무원중 기금출납공무원의 변경(안 제5조)
 (現 行) 기금출납공무원 : 연료계장
 (改正案) 기금출납공무원 : 가스계장
- 조문변경
 제9조 제1항중 “제5조”를 “제6조”로 변경

3. 개정근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분장규칙 제18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

서울特別市永登浦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제2항중 “연료계장” 을 “가스계장”으로 한다.
- 제9조 제1항 중 “제5조” 를 “제6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新 · 舊條文對備表

현행	개정안	비고
<p>제5조 (기금관리공무원의지정)</p> <p>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둔다</p> <p>②제1항의 기금출납 명령관은 산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u>연료계장</u>으로 한다.</p> <p>제9조 (용자신청절차등)</p> <p>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 대상자가 기금을 용자 받고자 할 경우.....</p>	<p>제5조 (기금관리공무원의지정)</p> <p>①</p>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p>② 제1항의 기금출납명령관은 산업과장으로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u>가스계장</u>으로 한다.</p> <p>제9조 (용자신청절차등)</p> <p>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 대상자가 기금을 용자 받고자 할 경우.....</p>	<p>영등포구 사무분장규칙의 개정 에 따른 직제 개편에 의거 일부 내용 변경</p> <p>조문 변경</p>